

행 정 자 치 부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양구군

관 련 자 양구군 ○○○○과(전 ○○○○과) 지방○○○○○ ○○○

내 용

지방○○○○○ ○○○는 2014. 4. 2.부터 2015. 1. 13.까지 ○○○○과에서 보전관리지역 내 도로건설공사 가설사무소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별표 4”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이상인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승인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74조(벌칙)에 따라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구군 ○○○○과는 보전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5,000m²이상인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양구군 ○○읍 ○○리 000(답), 000(전)번지에 지방도 000호선 “○○터널 도로건설공사 가설사무소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를 2014. 10. 10. 허가(승인) [(총면적 5,027m²(답 4,012m², 전 1,015m²)] 하였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 이행 현황〉

사업명	소재지	면적(m ²)	사업자	승인기관	사업허가일	사업기간
가설건축물 신축	양구군 ○○읍 ○○ 리 000, 000번지	5,027	(주)○○○ ○○○	○○군 ○○○○과	'14.10.10	허가일~ '17.10.31

위와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터널 도로건설공사 가설사무소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를 허가(승인)한 지방○○○ ○○ ○○○는 실무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승인)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